##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용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4871

발의연월일: 2022. 3. 11.

발 의 자 : 김용민 · 장경태 · 김승원

이수진 • 윤영덕 • 유정주

강민정 • 이용선 • 민형배

황운하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선거운동원 등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되어 있음.

하지만 「공직선거관리규칙」에 정해져 있는 수당과 실비는 현행최저임금 수준 이하보다 적게 지급되는 실정임.

이에 수당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음. 수당을 최저임금액의 120% 이상으로 정하려 함(안 제135조제2항).

법률 제 호

##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제1항의 수당과 실비의 종류 및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되, 수당은 「최저임금법」 제10조에 따라 고시되는 최저임금액의 120% 이상으로 책정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35조(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	제135조(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
수당과 실비보상) ① (생 략)	수당과 실비보상) ① (현행과
	같음)
② 第1項의 手當과 實費의 종	② 제1항의 수당과 실비의 종
류와 금액은 中央選擧管理委員	류 및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
會가 정한다.	원회규칙으로 정하되, 수당은
	「최저임금법」 제10조에 따라
	고시되는 최저임금액의 120%
	이상으로 책정한다.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